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7 | 2024.08.05 (2024.07.29~08.0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29~08.04)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4.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은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하였는 바, 주요 내용으로는 '이건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 마련' 등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심의기간 지연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제한, 법령정비 실태 주기적 점검 등 단계별 운영 개선사항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5.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PF 관련 상세 통계에 대한 공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성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며, '24.8월말까지 확정되도록 할 예정이며, 신디케이트론은 '24.6.20일 1조원 규모로 출범한 이래, 5개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디케이트론 대상 4개 유형(경·공매 사업장, 자율매각 사업장, NPL 투자기관,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에 대해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문의가 접수되어 유형별로 다양한 대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접수된 신디케이트론에 대해서는 참여 금융기관들이 사업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평가, 대주단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이 본 궤도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PF대출을 구성하는 브릿지론과 본PF 잔액 및 연체율 통계, 토지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 등 부동산 PF 관련 상세 통계('24.3월말 기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하는 펀드이익 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24.5.8.)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를 추가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우편·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규율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횡령·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등의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원이 공정위를 대상으로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최근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추후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 및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등입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금주(8/5~8/11) <본회의>는 8/5(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및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등, <교육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8/8),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8/9)를 실시할 예정,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9
- 제3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금융위원회)13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발간(국회예산정책처)13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5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행정안전부) 1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6
-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7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7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8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9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2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21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21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23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2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2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27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28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벤처기업부)28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29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2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3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3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3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3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3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3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3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3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39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3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4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4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4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4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4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4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44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45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4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4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4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4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4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49
•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49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5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51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51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5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5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5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5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5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5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5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5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57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57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5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5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29~08.04) [바로가기](#)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노동] 플랫폼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내용 (자산과세 분야)
-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안 (법인과세 분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이건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 마련’ 등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 ① 심의기간 지연 방지 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제한 ③ 법령정비 실태 주기적 점검 등 단계별 운영 개선사항 마련

2024-08-01

정부는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함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임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4.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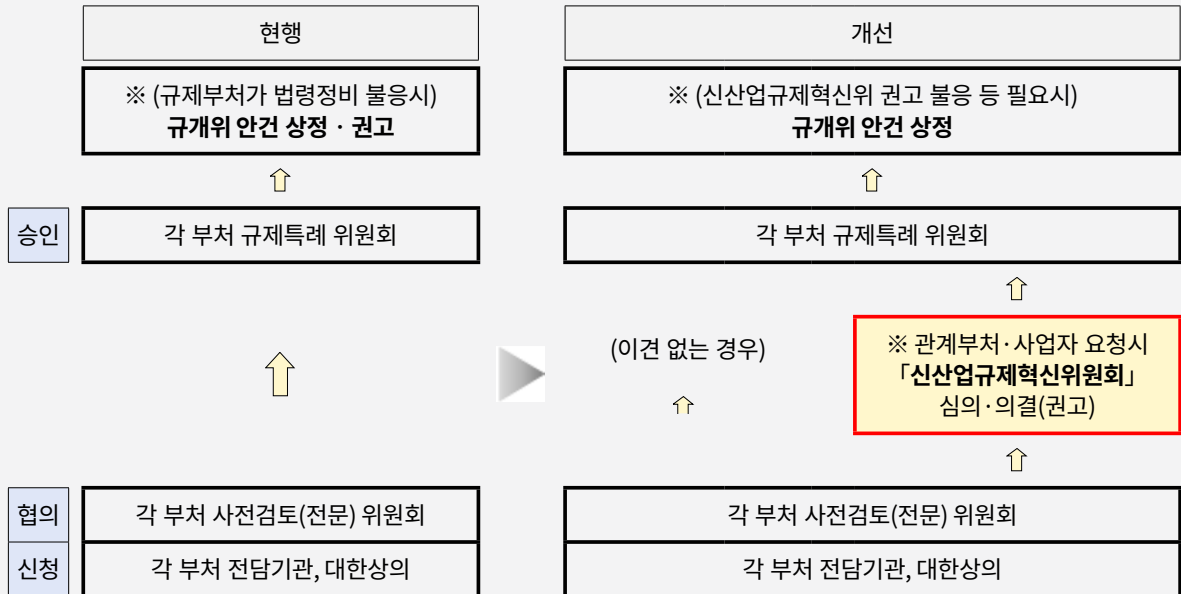
* 학계, 승인기업, 관계부처 대상 총 13회 간담회 통해 의견수렴(3 6월)

** 각 규제샌드박스별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5~6월)

「규제샌드박스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규제샌드박스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 ▷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하고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논의할 계획임
- * 사업자 신청시에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정



- ▷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하여 사업자에게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운동을 추진할 계획임
- ▷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
 -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하여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임
- ▷ 현재 8개 샌드박스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강화할 계획

② 실증 단계별 운용 개선

▷ 접수·심의 단계

-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 불성립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하여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 계획
- 심의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샌드박스 既승인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하여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예정
-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특례부여, 법령정비 등을 검토하는 Bottom-Up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Top-Down 방식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할 예정

▷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

-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사업개시 및 실증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

-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조실은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
- 인·허가 반려 등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비협조 지속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지자체 협조를 강화
-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인 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

▷ 실증진행 단계

-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임
- 원활한 안전성 검증계획 수립 및 필요 데이터 항목을 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전성 검증 방식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 법령정비 단계

- 실증 완료 후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규제부처가 관성적으로 실증을 연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하도록 할 계획
- 실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할 계획

< 추진 방향 >

개선원

- ◇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실증 지원**
- ◇ 규제샌드박스 효과성을 높이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 ◇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자 애로 해소



개선방안

추진 체계	추진 체계	•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정기구 설치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개편 • 표준 업무처리절차(총리훈령) 마련 등 과정관리 강화 • 규제샌드박스 성과평가 강화	
		운영 단계	① 접수·심의 단계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의결 - 부처 불수용시 규개위 안건 상정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식 확산
			② 실증준비 단계 ▲ 부가조건 합리성 제고 - 부가조건 부여기준 마련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의결 ▲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참여 범위 확대
			③ 실증단계 ▲ 실증데이터 축적·관리 강화 - 특례승인시 안전성 입증 및 법령개정 판단에 필요한 지표 사전 확정
			④ 법령정비 단계 ▲ 법령정비에 대한 관리 강화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의결 - 실증종료전 규제개선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 정기점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과감한 도전을 하는 혁신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

신산업 8개 분야
1,266건 사업 승인
308건 규제 개선
* 24년 6월 누계

“신산업 규제혁신의 플랫폼”

SANDBOX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1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 민간 전문가 중심, 제3의 조정기구 설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개편)

- 심의 지연, 부가조건 개시 지연, 법령개정 지연 등
규제샌드박스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 강화



● 규제샌드박스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 8개 분야 공통 적용



2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① 접수·심의 단계

☐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 시, 이견 조정 강화

-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협의 불성립 시
‘혁신위(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가 추가 조정

☐ 동일·유사 사업, 신속 처리

-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 특례 권한을
부여하여 동일·유사 사업은 신속히 특례 부여 등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여 규제특례를 부여



②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

☐ ‘규제특례위원회’의 부가조건 적정성 검토 강화

- 부가조건 부여기준 마련,
실증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부가조건 부여 등



☐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실증 지연, 방지!

-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추진
-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자체 협조 강화



③ 실증진행 단계

☐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의 축적·관리 강화

-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
- 표준화된 안전성 검증 방식 마련 등



④ 법령정비 단계

☐ 법령정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실증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규제부처가 현 단계에서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

- 실증 종료 전 규제 개선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 정기 점검 등



금융위원회

제3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4-07-3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차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PF 관련 상세 통계에 대한 공개 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금융권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관련 사후관리, 신디케이트론 조성·지원 상황 등 연착륙 대책 추진상황 점검**
 - 현재 사업성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며, '24.8월말까지 확정되도록 할 예정
 - 신디케이트론은 '24.6.20일 1조원 규모로 출범한 이래, 5개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디케이트론 대상 4개 유형(경·공매 사업장, 자율매각 사업장, NPL 투자기관,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에 대해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문의가 접수되어 유형별로 다양한 대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접수된 신디케이트론에 대해서는 참여 금융기관들이 사업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중
- ② **분기별로 공개하던 PF대출 외에 PF대출을 구성하는 브릿지론과 본PF 잔액 및 연체율 통계, 토지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 등을 대외 공개**
 - 사업성 평가, 대주단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이 본 궤도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①PF대출을 구성하는 브릿지론과 본PF 잔액 및 연체율 통계, ②토지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 등 부동산PF 관련 상세 통계('24.3월말 기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함
- ③ **현재의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조율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국회예산정책처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발간

2024-07-26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FOCUS 제73호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을 발간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배경 및 제도 개선안, R&D 예타의 순기능과 역기능, 향후 R&D 예타 폐지를 위한 주요 논의 사항 등에 대해 분석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R&D 예타는 '18년 이후 25.8조원 이상의 예산 절감으로 재정효율화에 기여해왔으나, 정부는 최근 R&D 예타 폐지 방침 발표('24.5.17)
- 예타 제도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 제도로 '99년 도입되었고, '18년부터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를 위탁받아 운영
 - 정부는 신속·유연한 R&D 사업 추진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되, 부실사업 방지를 위한 민간 전문가 활용 '사전기획 점검제' 등을 추진할 계획
- ② R&D 예타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논의 시 R&D 예타의 순기능과 역기능,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R&D 예타 폐지 필요성과 신설 제도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 필요
- 정부가 R&D 예타 폐지 후 '사전기획 점검제'로 부처 사업기획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유사하고, 사전컨설팅 성과를 고려할 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
 - 정부는 최근 R&D 투자의 적시성·도전성이 미흡하여 R&D 예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R&D 예타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지양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에 기여해온 순기능을 고려하고, 기존 R&D 예타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31 시행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구매자는 분실·도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1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해당 중고 통신단말장치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통보기기 등록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40조의2제1항제5호, 제51조, 제51조제2항제3호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31 시행
-----------	-----------------------------------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0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의 인증기준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추 것 및 품질·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추 것 등으로 정하고,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의2 신설, 제3조의3 신설, 제3조의4 신설,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신설)

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

2024-07-31 시행

승강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협의 및 시행계획의 내용 (제2조 및 제3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

-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승강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승강기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승강기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하여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③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등을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통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 등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0조)

- 승강기사업자, 사업주관기관 및 시범사업 참여자 등은 정부로부터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29 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신고 서식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외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지 제7호)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31 시행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약국 실태조사에 관한 시기·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제9조의3)

- 실태조사 시기·방법(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법원의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결과 공표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위임 근거에 따라 공개방법, 공개내용(약국명, 주소 등)을 규정

②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3)

- 약국 개설자(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 시 자격정지 처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29 시행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의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신청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도록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적(監視的)·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형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사항 중 부양가족, 임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1조제2항,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6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31 시행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장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사실 은닉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종사원으로 고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용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의 결함 추정 범위 확대 (제8조의3)

-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별표 1의3 제1호다목3 신설)

- 자동차제작자 등이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③ 폐차 요청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별표 2 제2호하목)

-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함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별표 2 제2호무목 및 주목 신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에게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은닉으로 인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종사원으로 고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07 시행 예정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괄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

이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화된 주택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각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및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②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25 시행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2항 등)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30 시행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같은 차입자에게 연계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그 밖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차입자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별 투자한도를 ‘4천만원’ 및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1조제2항, 제27조제6항제1호나목, 제27조제6항제2호나목)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30 시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을 면책해주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에 제12호 신설, 제2조제1항에 제13호 신설, 제2조제1항에 제14호 신설, 제2조제1항에 제15호 신설,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01. ~08.21.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펀드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안 제26조의2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제159조의2제1항)

-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 제고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tel:044-215-42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07.31. ~08.02.
-----------	---------------------------	------------------------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

이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2조)

-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견 수렴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 그 내용을 공고함

②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안 제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함

③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안 제4조)

-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④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안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유치 등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⑤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안 제6조)

- 정부가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⑥ 표준화 지원 (안 제7조)

-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지원 내용 및 표준화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⑦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8조)

-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이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⑧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안 제9조)

- 가상융합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⑨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안 제10조)

-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⑩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⑪ 시범사업의 실시 등 (안 제1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⑫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안 제13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함

⑬ 임시기준의 제안 등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임시기준 신청인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보완 기간 제외)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협의 및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함

⑭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안 제17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전화: 044-202-6352, 팩스: 044-202-6036\)](tel:044-202-635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4.07.30.
~09.10.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 (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자원안보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함

②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③ 자원안보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등 13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함

④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7조)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⑤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안 제10조)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게 주요 외국정부·외국기업의 핵심자원 공급망 구성 관련 현황과 위험요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하게 할 수 있음

⑥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안 제11조)

-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함
-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⑦ 공급망 점검·분석 (안 제12조)

-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⑧ 비축 (안 제16조)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으로 함

⑨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안 제24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⑩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안 제32조)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⑪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안 제37조)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핵심자원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핵심자원의 특정 기간 내 사용 제한, 공급기반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규정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전화: 044-203-5251, 팩스: 044-203-4764\)](tel:044-203-525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4.07.30.
~09.10.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 (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안 제2조)

-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②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안 제3조)

-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③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관리 (안 제4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의 유형별·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등을 포함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전화: 044-203-5251, 팩스: 044-203-4764\)](tel:044-203-5251)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01.
~09.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24.5.8.)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① 업종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 (안 제3조제2항)**

- 국내 수요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중분류가 달라지나 현재 규정상 업종 동일성이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되는 데에 제한이 있었음
- 국내 복귀 전 해외 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판단의 기준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함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와 국내 수요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으로의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②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판단범위 설정 (안 제3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두 법령간 동일성 판단 범위를 통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심의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③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확대 (안 제3조의2)

-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국내복귀의 필요성이 크며, 국가전략기술 · 공급망핵심 업종의 국내투자 활성화 필요가 있음
- 해외 사업장의 구조조정 없이 국내 신 · 증설 투자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고,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함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로 국가전략기술 · 공급망핵심 업종 기업의 유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01.
~09.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24.5.8.)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 · 동반형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협력형 · 동반형 복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협력형 복귀기업의 완화된 축소기준 적용범위 확대 (현행 제3조제1항제2호가목1),2) 삭제)

-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협력형 복귀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경우에만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완화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완화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협력형 복귀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를 적용받는 요건 규정 중 둘 이상의 협력형 동반 요건을 삭제하여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협력형 기업인 경우 완화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함
- 해외진출기업의 협력형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② 동반형 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 (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둘 이상의 기업이 복귀하는 동반 복귀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일반 국내복귀시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데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있음
- 동반형 복귀시 해외사업장을 현행 25%이상 축소하여야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축소’로 인정하던 것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10%이상 축소하여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부담이 적어진 기업들이 국내투자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됨

③ 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을 위한 서류 규정 (안 제11조)

- 실제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형 복귀기업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을 규정하여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제출의무 서류목록이 실제 선정시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목적 반영하지 못하여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못했던 바, 이를 현실화하여 제도 활성화
-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규정이 불완전하여 실제 선정 및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규정 보완을 통해 협력형 복귀 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2\)](tel:044-203-4069)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7.29.
~09.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따른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제출 시 외국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등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가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7.9., 시행 2024.10.10.)됨

이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및 자료 작성방법 등을 명시하며,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 통지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여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명시 (안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5호가목, 제5조제1항제5호나목, 제5조제1항제5호다목)
- ②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등 명시 (안 제7조제4항, 제7조제4항제2호)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 명시 (안 별표5 제2호사목)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tel:044-201-678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31.
~09.11.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

이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세부 범위를 정하고, 안전성인증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부품에 핵심장치 추가 (안 제8조의2)

- 새로운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추가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② 핵심장치의 종류 신설 (안 제12조의3)

-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구체화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46, 팩스: 044-201-5518\)](tel:044-201-384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7.30.
~09.1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를 추가 (안 제42조제2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전화: 044-204-7591, 팩스: 044-204-7599\)](tel:044-204-7591)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2024.07.31.
~09.09.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안 제2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관보에 시행계획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제공 등 협력의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종합계획 등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체계를 마련함

②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광고의 방법·매체 (안 제3조)

-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매체 등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③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시설기준 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또는 시험 등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기구를 다른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와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안 제10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업 허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 기기에 대한 수집검사 및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 행정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기술·기준 및 방법 등의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표준화 기반 구축 등의 지원 업무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에 위탁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TF팀](mailto:식품의약품안전처_디지털의료제품TF팀) (전화: 043-719-3772, 팩스: 043-719-3750)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4.07.31.
~09.09.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디지털기술의 범위와 분류 및 등급 지정 기준 (안 제2조~제3조)**
 -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목적 및 잠재적 위해성 판단기준 등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분류와 등급을 지정토록 함
- ②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와 방법 등 (안 제4조)**
 - 식약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 등급 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해 관련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 ③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절차 및 변경허가 기준 마련 (안 제5조~제11조, 안 제19조~제23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과 제품별 허가·인증·신고 대상(면제대상 포함) 요건, 변경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④ **디지털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기준 등 마련 (안 제12조~제13조)**
 - 디지털의료제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보안지침 등 품질관리체계의 기준과 품질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함
- ⑤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 세부기준 마련 (안 제14조~제18조)**
 - 디지털의료제품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절차와 면제 대상, 기관 외 실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및 실시관리기준을 마련함
- ⑥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마련 (안 제24조)**
 - 디지털의료기기 공급 설치 장소 확인 및 결함, 오류 시 안전조치 실시 등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마련함
- ⑦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마련 (안 제25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실사용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 및 실사용 평가 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⑧ **디지털의료기기 우수관리체계 인증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마련 (안 제26조~제27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우수관리체계 인증 신청 요건과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⑨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정 절차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방법 마련 (안 제28조~제29조)**
 -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정 절차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표시기재 방법, 내용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절차 등 마련 (안 제30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 및 변경적합판정을 위한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⑪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마련 (안 제31조)**
 - 정보통신서비스 형태의 제공 등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 시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함

- ⑫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절차 등 마련 (안 제32조~제37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절차, 품목별 허가 요건 및 면제 범위, 변경허가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⑬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 마련 (안 제38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를 마련함
- ⑭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 신고 및 해외제조사 등록 절차 등 마련 (안 제39조~제40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의 절차 및 요건, 해외제조사 등록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⑮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 범위 및 준수사항 등 마련 (안 제4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범위와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⑯ **디지털융합의약품 실사용 평가 준용 규정 마련 (안 제42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실사용 평가에 대해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 규정을 준용함
- 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안 제43조)**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신고 신청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⑱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마련 (안 제44조)**
-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디지털의료제품 등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고, 영향평가 업무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⑲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등 마련 (안 제45조)**
-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⑳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안 제46조)**
-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함
- ㉑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마련 (안 제47조~제50조)**
-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및 준수사항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㉒ **공무원의 증표 마련 (안 제51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권한 표시 증표 서식을 마련함
- ㉓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안 제52조)**
-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의무 부과되거나 권리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㉔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안 제53조)**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시 그 심사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㉕ **수수료 납부 대상 및 면제 대상 등 마련 (안 제54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업허가, 품목허가·인증·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수수료 납부 및 면제 대상, 납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TF팀](#) (전화: 043-719-3772, 팩스: 043-719-375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7-29 발의
-------	---	---------------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대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08-02 발의
-------	---	---------------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중개판매의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산주기는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임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티몬-위메프는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사주의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을 전용할 우려가 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2024-08-01 발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경우 우편·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규율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체계 개편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우편·카탈로그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도 그들 간의 거래방식과 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거래중개’, ‘연결수단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 전반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게 용어들도 정비함

②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5항)

- 현행법은 판매자가 생활용품·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이하 “인접지역 거래”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주문 당일 상품을 소비하고, 손쉽게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문-소비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주소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전제로 설계된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배달앱의 등장으로 음식료 등이 판매될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가 물리적으로 크게 넓어져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손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에 관한 규제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이 대부분 제외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인접지역 거래’의 경우에도, 배달음식료 판매업자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를 할 때 자신의 상호·주소·전화번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호·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과 같은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 중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도록 함

③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 합리화 (안 제3조제6항)

- 상조서비스의 경우 계약체결 및 선수금 납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시점에야 비로소 서비스 공급이 개시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그 공급계약(선불식 할부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상조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다시 말해, 사망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상조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조서비스 공급계약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판매한 상조회사는 두 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중복 체결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④ 역외적용 규정 신설 (안 제5조)

- 국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 다만, 「국제사법」 제2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국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국내소비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토록 함

⑤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 (안 제16조 및 제32조)

- 상품 검색결과 순위 결정기준, 소비자 이용후기 등은 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검색결과 순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여부 등 그 순위 결정에 이용되는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표시되는 내용에 영업비밀은 제외되도록 하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⑥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안 제18조 및 제32조)

- 특정 소비자의 기호·연령·성별·소비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만 제공되는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구매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받고 있음
-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

⑦ 외국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안 제19조)

- 외국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사업자가 국내영업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집행과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그에 수반되는 문서송달 등도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움

- 이에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⑧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 (안 제20조 및 제30조)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미흡하고,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에도 그 상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리콜명령 규정은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리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위해상품의 회수·수거·폐기·판매중지 등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그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그 상품 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함
- 아울러,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그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그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함

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안 제24조)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1)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이하 “직매입거래”라 한다)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이하 “중개거래”라 한다)하기도 하는 경우, 이런 직매입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판매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고, (2) 중개거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접수·대금수령·결제·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 업무수행 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품의 판매주체나 청약접수 등 업무의 수행주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그 상품과 관련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현행법상의 의무와 함께, 직매입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판매주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중개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님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청약접수·대금수령·결제·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⑩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소비자간 거래에 관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직매입거래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니면서 판매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청약접수·대금수령·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3) 청약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함

⑪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안 제31조)

- 중고마켓 등 개인 간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C2C 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함
- 이에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내역 등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⑫ 동의를결제도 도입 (안 제62조 및 제63조)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중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이하 “소비자 기만행위”라 한다)의 경우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주나,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함

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안 제64조)

-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명령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같이, 명백한 범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의 내용에 있어서는 해당 행위의 중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⑭ 금지·무효화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 확대 (안 제66조)

- 현행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안 제15조)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약정의 범위가 좁아 소비자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금지·무효화의 대상이 되는 약정에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배제(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까지 추가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024-07-30 발의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권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2024-07-30 발의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2024-07-31 발의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4-07-3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설계사에 제공하였으나,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받았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향후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22조의9 및 제32조제4항 등)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2024-07-30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에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597개에 이르고, 이 중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7,628개 업체로,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로 이들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관리·감독의 공백을 악용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위법한 추심을 일삼는 등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3조의5 및 제13조 등)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2024-08-01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4호)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2024-07-3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2024-07-31 발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우선 현행법 제111조에선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한정됨.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는 소송 상대방에 대해 기술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한 현행법은 기술 유용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유하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기술 유용 사례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등의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그리고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공정위를 대상으로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음 (안 제96조의2 신설)
- ②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또는 심사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등을 포함한 증거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0조)
- ③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시, 해당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엄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11조 및 제119조)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2024-07-31 발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이나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 제35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술 탈취로 피소된 당사자 기업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 침해 또는 손해 야기 행위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 현행법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임

이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에 대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소송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술탈취 등으로 인한 신고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정위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하고,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함 (안 제22조제4항제1호)
- ②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법원이 이 법 위반사실과 기술자료 침해의 증명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2024-08-01 발의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동일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2024-07-31 발의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줄어든 수준임.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108.87) 대비 10.7%가 올랐음.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2조제3호러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07-29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3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의원 등 12인)

2024-07-31 발의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08-01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중·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6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024-08-01 발의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됨

원자력은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력의 핵심 생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원자력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므로,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초격차’ 제작기술 및 제작시설 확보와 차세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특히, 미래 발전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성장세가 꺾여 현재는 국내 개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회까지 줄면서 팀은 재정적 부담과 해체,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 등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산업 규모는 감소하고 산업생태계는 열악한 상황임

이에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정된 종목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투자·운영에 드는 전반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선순환 및 선수단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구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여 규정 (안 제10조제1항)
- ②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안 제24조제1항)
-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안 제25조의8 신설)
- ④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현행 특례를 확대 (안 제104조의27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024-08-01 발의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은 과세 근거가 없어 2023년 기준 총 11.7조 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세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무분별한 광고행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담배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일반 담배 제품들과 달리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또한 불가한 실정임

미국, 캐나다 등과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 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최근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추후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024-08-01 발의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2024-07-30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3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2024-07-30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2024-07-30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수가 폭증함에 따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 때 현행법은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함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2024-07-30 발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면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 요금·수수료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해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안 제28조의2 신설)

이와 함께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3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2024-07-29 발의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②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6조제4항 신설)
- ③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9조의3 신설)
- ④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 (안 제16조의2 신설)
- 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16조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07-29 발의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 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③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등의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안 제9조)
- ④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0조)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및 토종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안 제15조)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7조)
-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안 제20조)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23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2024-07-30 발의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주요국의 보호정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의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24-07-30 발의
---------------------	----------------------------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2024-07-29 발의
---------------------	---	---------------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 ②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 (안 제2조)
- ③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안 제4조)
- ④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 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8조 및 제9조)
- ⑥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⑦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 · 관리하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⑧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을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08-01 발의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미치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생산유발 감소액: 41조 9,350억원, 고용유발 감소인원: 17,647명, 2020년 기준), 지역 사회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 ②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 (안 제2조)
- ③ 이 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안 제4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 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 (안 제6조)
- ⑥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⑦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⑧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⑨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2024-07-3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2024-08-01 발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 (안 제명)
- ②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 (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2024-08-01 발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024-08-01 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024-08-01 발의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 신·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5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024-07-29 발의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인해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항시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이로 인해 근무시간 외의 업무 연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노동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업무 지시에 시달리게 되어,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가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50.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조사됨. 또한,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와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큼.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에서 노동 관련 법률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짐.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2024-07-30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2호)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2024-07-31 발의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 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2024-07-29 발의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 2,334만㎡에서 2020년 8억 4,004㎡로 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000명에서 132만 8,000명으로 47%나 증가한 상황임

이에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 (안 제22조의2)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

②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

-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의무, 토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속임수를 통해 부동산등 매수를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매수강요행위, 부동산자문업에 대한 겸업행위를 금지함

③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 (안 제22조의8)

-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

④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안 제22조의10)

- 부동산자문업자의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및 알선행위,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자문하는 행위,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⑤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 (안 제22조의11)

-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⑥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안 제22조의13)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경우 분양대상 부동산등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속임수를 통해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행위를 금지함

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2024-07-30 발의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2024-08-02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사고원인의 파악 · 분석 외에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8/5(월) 14:00	안전심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교육위	전체회의	8/8(목) 10:00	- 법안 및 청원 상정 -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전체회의	8/8(목) 10:00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방위	전체회의	8/9(금) 10:00	-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전체회의	8/8(목) 15:00	-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복지위	전체회의	8/8(목) 15:00	-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5(월) 14:00	온라인 사이버레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정을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5(월) 14:00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문정복·강득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8/6(화) 09:30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중 관계 해법	위성락·윤건영 의 원실 등	국회 사랑재
	8/6(화) 13:30	가정어린이집 2024 정책토론회 -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	문정복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8/6(화) 14:00	경자유전 원칙 살리는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제도, 어떻게 개선하나	김정호·임미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8/6(화) 14:00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	장철만·이정문 의 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8/6(화) 14:00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	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7(수) 10:30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비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임광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8/7(수) 14:00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이재관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8/7(수) 14:00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강민국 의원실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8/7(수) 14:00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윤종오·황운하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8/7(수) 14:00	화성시 동탄 과학고 유치 위한 정책토론회	이준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8(목) 09:30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정동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8/8(목) 10:00	빅플러시대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강민국 의원실, 한국경제TV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8/8(목) 10:00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정태호·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등	8/7(수)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6호)」 발간	국회사무처	
	8/6(화)	「THE 현안」 제22호 발간 - 이상기온과 1.5°C 임계점	국회도서관	
	8/7(수)	「World & Law」 2024-14호 발간 - 마약 범죄 사각지대, 셀프 마약 처방 방지하려면?		
	8/7(수)	「금주의 서평」 제687호 발간 - 도서명 : 기꺼이 나의 죽음에 동의합니다 저자 : 진 마모레오, 조해나 슈넬러		
	8/8(목)	「현안, 외국에선?」 제88호 발간 -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8/9(금)	「예산춘추」 통권 제75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29(월)	「THE 현안」 제21호 발간 - 글로벌 지수를 통해 본 대한민국 2024년	국회도서관	
	7/31(수)	「Data & Law」 2024-8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7/31(수)	「금주의 서평」 제687호 발간 - 도서명 : 기꺼이 나의 죽음에 동의합니다 저자 : 진 마모레오, 조해나 슈넬러		
	7/31(수)	「NABO Focus」 제74호 발간 -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7/31(수)	「이슈와논점」 제2264호 발간 -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회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8/1(목)	「이슈와논점」 제2265호 발간 -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제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가능할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29~08.04)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29(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7/31(월)	노동	플랫폼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7/31(월)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내용 (자산과세 분야)
8/1(목)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안 (법인과세 분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